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1. 8. 27.> (앞 쪽)

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

처리기간
30 일
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업 체 명		전 화 번 호	
	주소 또는 소재지			
시행자 지정 신청 내용				
신청지역	복합환승센터 명칭		사업시행면적	㎡
	위 치			
개발사업 시행계획	사 업 명 칭			
	사 업 목 적			
	사 업 개 요			
	시 행 기 간	~	시 행 방 법	
	자금계획(천원)	(총액)	(내자)	(외국자본)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위치도 2. 사업계획서 3. 자금조달계획서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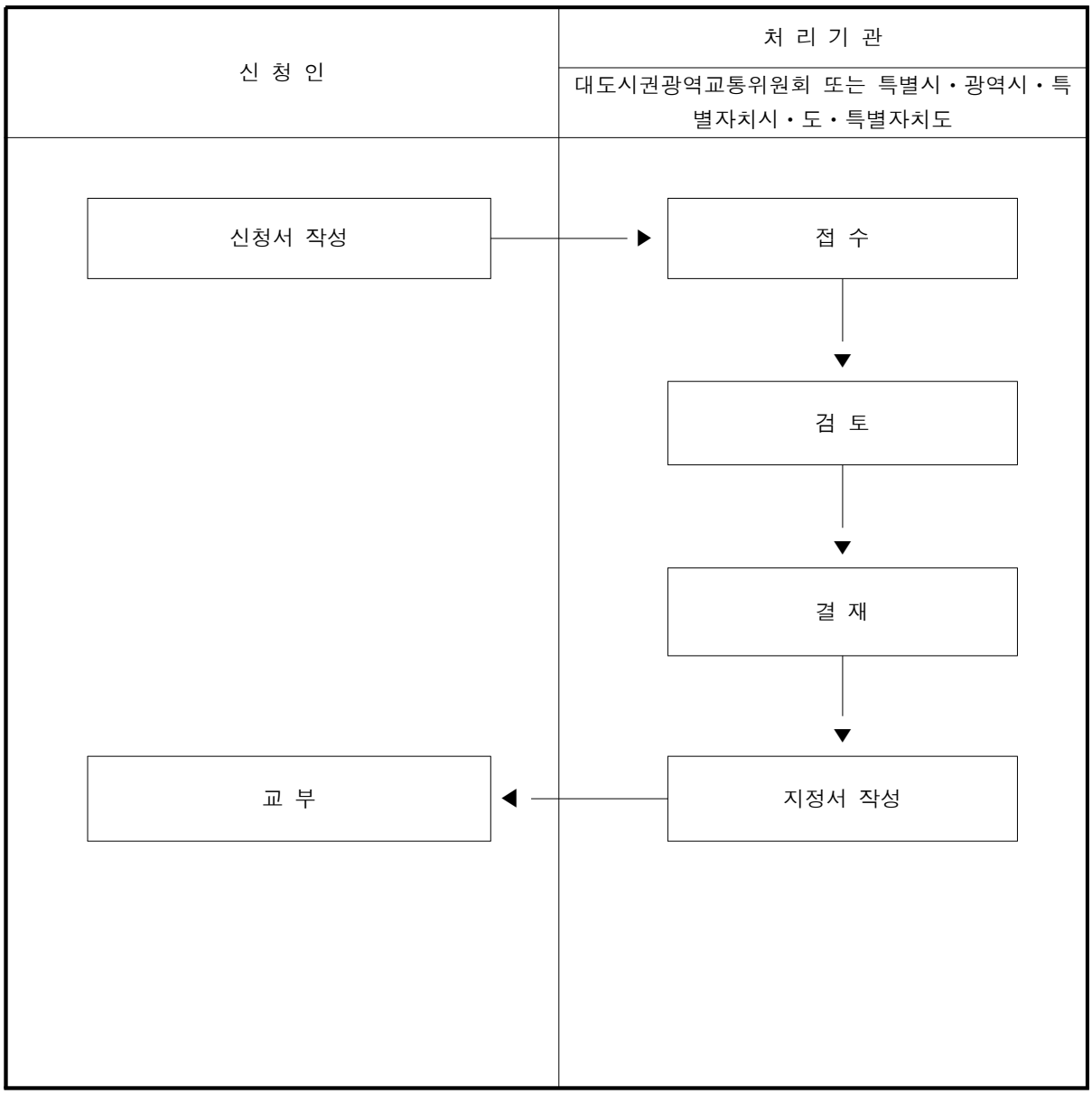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